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의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(법률 제17007호, 2020. 2. 18. 공포, 2021. 1. 1. 시행)이 공포됨에 따라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. ~ 2020. 0. 0.)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호의 이외의 사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은”과 “보건복지부”를 각각 “시·도지사는”과 “시·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6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1조제1항”으로 하고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하며, 제9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”를 “시·도지사가”로 한다.

제17조의 “보건복지부장관은”과 “보건복지부”를 각각 “시·도지사는”과 “시·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, 제5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조제

3항의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, 제6조제1항의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20일	
신청인	의료기관 명칭		전 화 번 호		
	의료기관 주소		외 국 인 환 자 유 치 진 료 과 목		
	대 표 자 성 명		대 표 자 생 년 월 일		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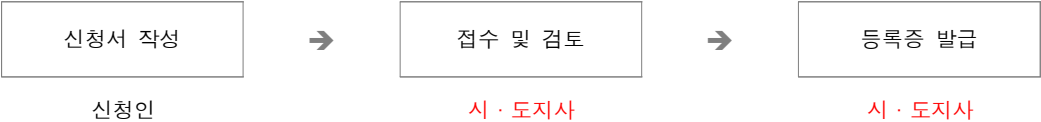
사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가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나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. 사업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 의 사 항

사·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처 리 절 차



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20일	
신청인	명 칭			전 화 번 호	
	대 표 자 성 명			대 표 자 생 년 월 일	
	주 소				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가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. 정관(법인만 해당합니다) 1부 마. 사업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시·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수 및 검토



등록증 발급

신청인

시 · 도지사

시 · 도지사

등록번호 제 호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

1. 의료기관 명칭
2. 의료기관 주소
3. 대표자 성명
4. 대표자 생년월일
5.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과목
6. 유효기간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

직인

등록번호 제 호

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

1. 명칭
2. 주소
3. 대표자 성명
4. 대표자 생년월일
5. 유효기간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

직인

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20일	
신청인	등 록 구 분	외 국 인 환 자 의 료 기 관 [] 외 국 인 환 자 유 치 업 자 []			
	명 칭		연 락 처		
	대 표 자 성 명		대 표 자 생 년 월 일		
	주 소				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가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.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.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.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.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.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



접수 및 검토



등록증 발급

신청인

시 · 도지사

시 · 도지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제5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
1. ~ 4. (생략)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 · 도지사</u> 에게----- -----		
1.~ 5. (생략)		1.~ 5. (현행과 같음)		
③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은 제1항 또는		③ <u>시 · 도지사</u> 는 -----		

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④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(이하 "외국인환자 유치기관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)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

----- 시·도 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시·도지사에게 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) ① -----

-----2-----
개월-----

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조(사업실적 보고)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.

제17조(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등록 취소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-----시
· 도지사에게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업실적 보고) ① -----
-----제11조제1항-----

-----시
· 도지사에게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시 · 도지사-----

제17조(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등록 취소) 시 · 도지사는-----

-----시 · 도-----

-----.